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자 동 차 관 리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상 택시미터 종류가 추가됨에 따라 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 등에 관한 권한 위임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검정을 진행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의 주요 변동사항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이륜자동차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택시미터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권한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미터는 제외(안 제17조제1항제6호, 제7호)
- 나.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안 별표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검정”을 “검정(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미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업무정지명령”을 “업무정지명령(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미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오. 법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 지연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신고 지연기간이 90일 초과 174일 이내 인 경우 3) 신고 지연기간이 175일을 초과한 경우	법 제84조제 5항제6호의2	2 2만원에 91일째부 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을 더한 금액 30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권한의 위임) ①국토교통 부장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다.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 에 관한 <u>검정</u>	6. ----- ----- ----- <u>검정(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택시미터는 제외한 다)</u>
7. 법 제4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을 위한 택시미터전 문검정기관에 한한다)의 지정 과 이에 대한 지정취소 및 <u>업 무정지명령</u>	7. ----- ----- ----- ----- ----- <u>업 무정지명령(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미터는 제외한다)</u>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연 락 처	(044) 201 - 3856